

美 뉴저지, H/W 구독형 서비스 금지 법안 발의

KATECH Insight

- ◆ 완성차 기업들이 자동차의 각종 기능에 대해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 뉴저지 주에서 자동차에 기 장착된 H/W에 대해 구독형 서비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됨('22.9월)
- ◆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소비자 여론·업계의 사업 전략에 파급력이 예상되며, 본 이슈를 통해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자동차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완성차 업계의 고심을 엿볼 수 있음

■ 완성차 기업들이 자동차의 각종 기능에 대해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증가세

- 완성차 기업들은 차량 판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착안하여, 주행이나 편의에 관련된 각종 기능에 대해서 구독형 서비스를 도입 중
- 차량내 구독형 서비스는 자율주행·커넥티비티와 관련된 S/W 서비스와 H/W 기능 관련 서비스로 구분
 - (S/W)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자율주행 혹은 운전자보조시스템(ADAS),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및 미디어 스트리밍, 원격 제어를 통한 차량 관리 등
 - * 테슬라, 볼보, GM 등은 자율주행 관련 서비스를 구독형 서비스로 진행 혹은 예정
 - (H/W) 열선 시트·스티어링 휠과 같이 차량이 제작될 때 H/W적으로 이미 장착된 기능들에 대해 소비자의 구독 여부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가 기능을 통제

■ 그러나 소비자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미 뉴저지 주에서 구독형 서비스 제한 법안이 발의

- 자동차의 완전한 소유에 익숙한 소비자들 사이에서 차량에 기 탑재된 기능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
 - * 최근 유럽 일부 완성차 기업들이 기 장착된 H/W 기능을 구독형 서비스로 전환하여 이슈가 되어 왔으며, 이는 산업동향 92호에 이미 제기된 '소비자 수용성'의 문제가 현실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
- 이에 '22.9월 미 뉴저지 주의 민주당 하원의원인 Paul D. Moriarty와 Joe Danielsen은 자동차 기능에 대한 구독형 서비스 일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([Assembly Bill No. 4519](#))
 - 제조사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커넥티비티 관련 서비스, 운전자보조시스템(ADAS) 등의 S/W 구독형 서비스는 허용되나, 제조사의 지속적인 비용이 투입되지 않는 H/W 기능의 구독형 서비스는 금지됨
 - * 다만 기 탑재된 H/W 기능을 영구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 판매하는 것은 예외
 - 법안은 차량 제조업체와 딜러 대상이며 처음 적발 시에 위반 당사자에게 최대 벌금 1만불, 재적발 시 최대 2만불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

Ⅰ 완성차 기업별 차량 내 구독형 서비스 현황 Ⅰ

구분	기업	서비스 내용
S/W	자율주행	테슬라 레벨2 자율주행 기능의 'Full Self Driving'
		GM '23년 반자율주행 기능의 'Ultra Cruise'
		볼보 레벨3 자율주행 기능의 'Ride Pilot'
	인포테인먼트	테슬라 내비게이션 및 음악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의 'Connectivity Package'
		GM 내비게이션, e-call, 텔레매틱스 서비스의 'On-Star'
		도요타 원격제어, 인터넷 연결 서비스의 'Remote Connect'
		현대차 원격제어, 스트리밍, 텔레매틱스 서비스 등의 현대 'BlueLink' 및 기아 'UVO'
H/W	BMW 열선시트/핸들, 하이빔 보조시스템, ACC/Stop&Go 기능 등	
	벤츠 후륜조향시스템 RWS* 기능(4.5도→최대 10도 회전 가능), 美지역 전기차 모델 대상 최대 모터 출력 20~24% 증가 기능(제로백 약 0.9초 단축)	

* 출처: 언론 및 각사 홈페이지

* RWS(Rear Wheel Steering): 전륜의 조향각에 맞춰 능동적으로 후륜 조향각을 제어하는 기술

▣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소비자 여론·업계의 사업 전략에 파급력이 예상됨

- 오는 12월에 열릴 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내외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고, H/W의 구독형 서비스화를 추구하는 완성차 업계의 사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음
- 법안은 뉴저지의 소비자 사기법(Consumer Fraud Act*)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, 결과에 따라 H/W 구독형 서비스가 원론적으로 소비자 기만인지에 대한 집단적 인식이 명확해질 전망
- * 뉴저지는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기만적인 관행을 금지하며, 차량을 판매, 리스, 금융 및 수리할 때 관련 행위를 할 경우 소비자 사기로 규정(N.J.S.A. 56:8-2 et. seq.)
- 법안 통과 시 뉴저지 외 지역에서도 H/W 구독형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이므로 H/W 기능의 구독형 서비스를 구상해 온 완성차 기업들은 사업 방향 수정이 불가피
- 다만, 현재로서는 뉴저지 주 내에서만 발의된 법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향후 논의의 전개 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음

▣ 이번 사례는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자동차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업계의 고심을 보여줌

- 그간 산업계 일각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시대의 이른 도래를 상정하고, 자율주행과 결합한 자동차가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를 이어 왔음
- 그러나 완전 자율주행차의 등장 시점이 불확실한 현재, 타 산업과의 협력이 필요한 S/W 서비스를 제외하면 완성차 기업 주도로 차량 내에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서비스는 한정적임
- * 특히 Android Auto, Apple Carplay 등 소비자들이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연결하는 서비스에 익숙해지면서 완성차 기업 주도의 서비스는 자동차 자체와 직결된 영역으로 좁아지고 있음
- 뉴저지 주 법안 이슈는 차량 판매 이후의 지속적인 수입원(revenue stream)을 확보하려는 완성차 업계의 고심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 여겨짐